



컨설턴트 윤리강령

전 문

우리는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며 나아가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는 초석으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모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본방향으로서 「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하나, 우리는 컨설팅 직무교범에 의거하여 모든 중소기업에게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컨설턴트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1장 총 칙

1. 목 적

윤리강령은 컨설팅업무 수행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컨설턴트에게 제 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① 이 강령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전문가(이하 “컨설턴트”라 한다)들에게 적용한다.
- ② 지원사업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의 중소기업(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는 본 윤리강령의 준수를 적극 권장한다.

제2장 컨설턴트의 기본윤리

1. 기본자세

- ① 컨설턴트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1) 주) 컨설팅 직무교범은 ‘컨설팅 표준화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Special Issue _컨설턴트 윤리강령

-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2. 행동규범

- ① 컨설턴트는 컨설팅 직무교범(주) 컨설팅 직무교범은 '컨설팅 표준화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하여 제시할 예정임에 의거하여 모든 고객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에 대한 기밀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한다.
- 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책임완수

지원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공감하여 신뢰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4. 자기계발

공공의 이익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5. 기술적인 역량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가장해서는 아니된다.

6. 공정한 직무 수행

자신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고객의 이익

고객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이익을 주겠다는 목적을 갖고서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완전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서비스로부터 수익이 창출된다고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8. 기밀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기밀로 다루고 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적 또는 그 밖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행위는 회피하도록 노력하며, 만약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0. 컨설팅 비용

고객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적 도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하며,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맞은 책임에 알맞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고객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1. 전문 업무영역

자신의 전문 업무범위와 영역을 달리하는 분야의

업무는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고객과의 결정사항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컨설팅의 목적, 대상범위, 컨설팅 비용 및 계산방법에 대해 고객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야 한다.

13. 보 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일일 컨설팅 수행 내용을 고객에게 보고하고, 지정 웹사이트(www.smbacon.go.kr)를 통해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고객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이익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만족

- 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3. 고객의 이익보호

- 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 ② 고객의 자산, 정보, 지적재산권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사후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후에도 고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고객에게 제공한 컨설팅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 4 장 지원사업에 대한 책임

1.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 ①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다.
- ②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직무수행의 질적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컨설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③ 컨설팅 결과 도출된 실행과제에 적합한 정부지원사업의 안내와 연계방안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관련기관에 추천함으로써 컨설팅 성과를 극대화한다.

2. 세부사업별 지침 준수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별 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컨설팅 직무교범 준수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된 컨설팅의 업무와 절차 등의 컨설팅 직무교범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1. 관계법령의 준수

공인회계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컨설턴트는 관계법령(주)참고자료 참조을



Special Issue _컨설턴트 윤리강령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고객과의 관계

- 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의뢰한 업무를 거절하거나, 컨설팅 계약 체결시 허위 약정하지 않는다.
- ② 고객이 부정한 방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자문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임하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대여하여 고객을 기만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밀유지

- ① 고객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 ②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 및 소유 데이터, 절차, 자료를 자신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③ 이전 고객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이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4. 부당경쟁

- 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개인을 내세우거나 권력의 이용 또는 금전 등을 제공하여 자신을 위촉할 것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수임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컨설턴트가 체결한 선점 계약을 무시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수료

- ①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고객이나 고

객의 지원부서 종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고객의 조직내부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해주는 대가로 컨설팅 비용외의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 ③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중이거나 제공한후에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을 해주는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6. 예 측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객을 현혹시킬 수 있는 장래에 대한 예측 또는 컨설팅 제공후의 성과에 대해 그 정확성을 단정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

7. 광고 선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게 하거나 과대하게 선전하는 방법 또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1. 시행기기

이 강령은 2005. 9. 1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컨설팅 직무교범(안)

※ 추후 컨설팅 표준화 용역결과에 의거하여 보완하여 제시 할 예정임

컨설팅 직무교범은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컨설턴트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컨설팅의 업무와 절차를 의미한다.

컨설팅 절차는 고객이 추구하는 목적과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컨설팅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일련의 활동으로 컨설턴트는 다음의 단계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야 한다.

□ 고객에 대한 마케팅과 조사활동

이 단계는 컨설턴트가 자신의 서비스를 마케팅하고 시장가능성을 조사하는 최초단계로서 고객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며 고객에게 자신의 능력, 전문성 그리고 윤리성을 확신시키기 위한 단계이다.

고객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컨설턴트가 보여주는 행동과 그에 따른 성과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컨설턴트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컨설턴트는 상세한 수준의 정보 분석보다는 고객 조직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컨설팅이 수행될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성격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사전진단

컨설턴트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에게 구체적인 작업들을 제안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문제를 진단하는 작업에 독립적으로 착수하여야 한다.

사전진단의 목적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진단은 컨설턴트의 경험과 판단에 따

라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재 고객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고객의 활동, 성과, 사업목적, 잠재적으로 가능한 사업, 그 밖의 경영상의 문제 등의 폭넓은 맥락에서 바라보며, 실제로 고객을 도와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분석하는 것이다.

□ 프로젝트 계획과 수립

프로젝트 계획은 성취될 목표와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기술적인 활동(정보시스템의 재설계, 고객의 지원부서 종사자에 대한 새로운 훈련프로그램의 도입 등)의 종류에 대한 윤곽을 제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을 때 고객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관해 기술하면서 가능한 한 목표들은 정량적인 수치로 측정된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계획은 각 단계별 산출물이 무엇인가를 기술하고 있어야 하고 컨설팅이 진행되는 동안에 언제, 어떠한 보고서가 고객에게 제출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고객에 대한 제안

고객에게 제출한 제안서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컨설턴트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실행해야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다른 사람들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고객에 대한 제안서는 기술 영역, 인력 구성 영역, 컨설턴트 배경 영역, 재무와 기타사항에 대한 영역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기술 영역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 추구하는 문제, 접근방법, 후속작업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턴트의 예비적인 평가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Special Issue _컨설턴트 윤리강령

인력구성 영역에는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할 컨설턴트의 이름과 이력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컨설턴트 배경 영역에는 특정 고객의 니즈와 관련지어 컨설팅회사의 경험과 역량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재무와 기타사항에 대한 영역에는 컨설팅 비용, 비용 청구에 관한 계획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 컨설팅 계약

컨설턴트와 고객이 컨설팅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이행하는 수단으로 고객에 대한 마케팅과 조사활동, 예비진단과 프로젝트 계획, 제안서 등이 컨설팅 계약에 반영된다.

컨설팅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 업무영역, 고객에게 제출되는 문서와 보고서, 컨설턴트와 고객 지원부서 종사자의 투입, 컨설팅 비용 및 지급절차, 컨설턴트의 책임과 한계,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중재방안, 서명과 계약일자 등

□ 진단

진단은 고객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추구하는 목적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영향력을 확인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작업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진단은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잘 선별하여 프로젝트의 본래 목적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활동계획수립

활동계획수립은 고객에 대한 진단된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개발하고 도출된 해결책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고객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며, 고객에 의해 선정된 해결안의 실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 실행

실행은 고객이 활동계획수립 단계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된 컨설턴트의 제안을 수용하는 단계로서 실행 프로그램들은 가능한 한 개별적인 과제, 작업, 실행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결과 등에 대한 측정과 통제가 가능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 고객에 대한 훈련과 개발

컨설팅 프로젝트에는 고객과 고객조직의 종사자에 대한 훈련과 개발을 작업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 컨설팅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평가는 컨설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결과를 얻기 위한 자원 활용이 정당했는지를 진단하는 것으로 컨설팅을 통해 달성한 고객의 이익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 절차에 대한 평가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어야 한다.

□ 최종보고

컨설턴트는 고객조직으로부터 철수할 때에 최종적인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는 제안되었던 사항들의 실행을 통해 얻은 실제적인 이익들을 지적하여야 하며, 고객이 미래에 착수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고 2

관계법령의 준수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컨설턴트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2003. 12. 11. 신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2003. 12. 11. 신설)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2003. 12. 11. 신설)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2003. 12. 11. 신설)
4.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003. 12. 1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2003. 12. 11. 신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공포 및 시행일 2004년 4월 1일)

② 법 제21조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특정 회사의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산 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공인회계사가 법 제2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

□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컨설턴트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년 12월 31일 법률 7306호)

제32조의3 (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제한) 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진단에 수반되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1998.2.28>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자기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법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와 현저히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히 수행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1997.12.13]

제33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개정 2004.3.22>)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Special Issue _컨설턴트 윤리강령

1995.11.22, 1996.12.12)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지도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지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때부터 지도사의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개정 2004.3.22〉

③삭제〈1997.12.13〉

